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55
----------	------

2025년 3월 5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정지웅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웅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은 체험·실천형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역사교육 실천 역량 제고라는 목표 아래 역사교육을 추진했지만, 학생들이 종종 특정한 관점이나 시각 등에 기반하여 역사를 다루는 교육과정을 학습하거나 교원 개인의 수준에 따라 표면적으로 역사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더욱이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전개됨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과 동시에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음.

- 이에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국의 역사 왜곡이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학생들이 역사교육을 통해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구체적 목적 및 기본원칙을 적시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특히 일본의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사실 등 역사적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건전한 역사관 형성 및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다.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호로 명시함(안 제5조).
- 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체험형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의 연계나 수업 설계에 필요한 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의 개발·보급을 신설함(안 제8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55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역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영화나 게임, 드라마, 웹툰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문화콘텐츠에서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2021년 SBS TV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조선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임에도 중국식 소품과 의복 등을 다수 사용해 2회 만에 종영하였으며,<sup>1)</sup> 중국 등에서 제작·유통된 영상 콘텐츠나 게임 등에서 역사적 인물이나<sup>2)</sup> 김치·한복과 같은 고유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왜곡하는 등의<sup>3)</sup>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1) BBC 코리아(2021.3.26.), 드라마 '조선구마사' 결국 폐지 결정...깊어진 '반중정서'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534771> (검색일 2025-02-13)

2)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의 소속으로 표시한 <문명 정복: Era of Conquest>,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국 제작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이 중국풍 갑옷과 일본도에 가까운 장검을 들고 있다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음. (자료 : 쿠키뉴스(2024.4.18.), 반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이제 정부가 나설 때”,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4170206> (검색일 2025-02-13))

3) 2021년 3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역사왜곡 등으로 민원이 들어온 7건의 중국 웹소설 등을 심의하여 일부를 유해간행물로 지정한 바 있고, 2020년 국내에 출시되었던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역시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한복 아이템에 관하여 중국 유저들이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며 게임 속 설명에 관하여 항의하자 한국 서비스 자체를 출시 7일 만에 종료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음.  
(자료 : 머니투데이(2021.4.10.), "한복은 시너웃, 삼계탕은 중국 것"... 선넘은 中 '문화 동북공정',

○ 더욱이 이러한 사건은 일본과 중국 등의 역사 왜곡 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 검정, 학술 연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2024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조선인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한 서술이 왜곡된 교과서가 다수 보급되었고,<sup>4)</sup> 중국 역시 2024년 배포한 대학 교재 「중화민족 공동체 개론」이나<sup>5)</sup> 같은 해 중국 기업이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등을<sup>6)</sup> 통해 동북공정<sup>7)</sup> 당시 정립된 역사 왜곡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역사 왜곡 사안 발생 시 교육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성명 발표, 대사 초치를 비롯한 외교적 대응,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한 학술 연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sup>8)</sup>

○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방면으로 전개 중인 국내·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외교적 노력, 민간단체 차원의 역할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716183675739> (검색일 2025-2-14) 등을 참조)

4) 2024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은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2017년 개정)」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2024년 검정 절차를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19종을 분석하여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 기재하고 있으며, 2종의 역사 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에서 '중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역사왜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2024.3.22.),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긴급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5) 연합뉴스(2024.11.3.), 고구려·발해가 변방 정권?... '사상적 무기' 더한 中 역사 왜곡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35200005?input=1195m> (검색일 2025-02-13)

6) 대전일보(2025.2.11.), AI가 동북공정 옹호?... 딥시크 "고구려·발해 中 역사에 속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137> (검색일 2025-02-13)

7)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약칭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과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 3성 사회과학원에서 합작하여,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 사업이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동북공정의 내용 중 논란이 된 지점은 “현재 중국 영토에 속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과거사는 중국사에 속한다”는 통일적 다문화국가론에 입각하여 진행된 역사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의 역사에 관한 역사 왜곡 논란을 촉발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동북공정의 연구 결과나 이론적 시각에 기반한 연구나 관련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자료 : 김현숙(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7-48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8) 외교부는 2019년 이후 매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책임교육정책관 아래 동북아역사대응팀을 두고 상시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지원, 대변인 성명을 통한 문제 제기 등을 시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역사교육은 국민 개개인이 조작되거나 허위인 역사적 서술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의 범사회적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역사교육은 국민 전체에 그러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특히 올바른 역사교육은 인류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폭넓게 이해하여 현재에 관한 성찰과 미래에 관한 조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과이자, 세계와 한국의 역사 전반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이기 때문입니다.<sup>9)</sup>
  - 따라서 역사교육은 단순히 역사 왜곡 대응의 측면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인격의 도야(陶冶)’를<sup>10)</sup> 실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서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추진”을 5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에서도<sup>11)</sup> 역사교육자문단 구성, 역사자료센터 구축, 선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역사교육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역사교육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6.8배, 2024년 대비 313.5배 증액 편성했고, 이러한 사실에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12.22.)」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의 72-74쪽을 정리한 것임.

10)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서울시교육청(2025),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51쪽.

있다 할 것입니다.

[표-1] 최근 4년간(2022~2024년)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 관련 예산 현황<sup>12)</sup>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2022년	78,900	68,247	- 동아시아 평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프로그램(온라인 포럼) 운영 - 영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 돌아보기 운영 등
2023년	74,270	70,630	- 베트남 역사교류체험단 국외현장연수 - 동아시아 역사교육교류 공유마당 등
2024년	1,600	1,580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연계 역사교육활성화 자문 등
2025년	501,600	-	- 동아시아 역사교육 교류 공유마당, 역사탐방정기대회 등 운영 - 역사교육선도학교, 역사교육자문단, 역사자료센터건립추진단 운영 - 현대사올레길 개발, 홈스테이활용학교 방문 지원 등

주) 2025년은 예산 집행액을 포함하지 않았음.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이후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4년까지 역사교육 관련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했는바<sup>13)</sup>, 교육청의 역사교육 시책 강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울시 내 학생의 역사 인식 제고를 통한 국내·외 역사 왜곡 대응 및 학생 개인의 정체성 함양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12)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16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658, 2025.2.10.)

13)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16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658, 2025.2.10.)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서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각각 교육·연수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이나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체계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기본원칙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비판적·실천적 역량의 함양,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유지, 대내외적 역사 왜곡 대응·건전한 역사관 형성 등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의 시행을 역사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2조제3항은 교육 주체가 역사교육에서 ① 중국의 동북 공정을 비롯한 역사 왜곡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 ② 대일 항쟁기 해외 독립운동사 및 강제 동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③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본원칙은 역사교육에 있어 동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동 조문은 정책 실행에 있어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을 심고, 동북공정이나 일제강점기의 가해 역사 축소 등을 비롯해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추진 방향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2조제3항은 특정 국가의 명칭이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자칫 일본·중국 등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등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2019년 서울·부산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sup>14)</sup> 2013년 제주도의회가 심의 중인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 중국 영사관이 항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sup>15)</sup>

- 서울시교육청 역시 안 제2조제3항에 관하여 “조례 내용에 국가명 등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향후 국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sup>16)</sup>

○ 그러나 제정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존하는 역사 왜곡 사례라는 점, ② 조문 기술상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14) 뉴시스(2019.9.6.), 日 관방 "서울·부산시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매우 유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921&cID=10101&pID=101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921&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5.2.22.)

15) 제주의 소리(2013.12.13.), “中영사관 항의에…, 제주 ‘이어도 조례’ 또 불발”,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084> (검색일 2025.2.22.)

1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수정 제출(1건)(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128, 2025.2.19.)

강화 조례」 17) 등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조문의 표현이나 내용 등에 있어 수정이 요구되는 수준의 중대한 흠결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2조제3항의 적정성 여부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역사 왜곡 대응의 측면, 역사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특성,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정의 및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역사교육’ 과 ‘학교’ , ‘학생’ 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조례안은 ‘역사교육’ 을 “역사적 배경, 사건, 인물 등을 학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어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생에게 체험형 역사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역사교육의 범위와 내용과 부합하고, 조례 제정 목적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을 꾀하고 있다는 측면

---

17)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분명하게 기록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바람직하게 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목표, 학습 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안 각호)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본계획 수립은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 전반에 있어 정기적으로 정책 환경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역사교육 활성화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개별 학교의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역사교육 관련 정책이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3호의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연구’에 ‘공유·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sup>18)</sup>
-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각급 학교로의 보급과 확산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현행 조례안과 교육청이 제안한 조문 간의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보이며, 조문 수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문에 ‘공유·활용’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1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수정 제출(1건)(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128, 2025.2.19.)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교육청이 개발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이에 기반한 교수법 등을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교육·연수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안 제6조~제8조)

○ 안 제6조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체험 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자료 개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수 등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각각 역사교육에 관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수의 운영,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개발·보급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들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별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역사 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안 제8조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체험 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이 다른 체험이나 현장 답사 등과의 차별화를 통해 역사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지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목적의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역사교육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역사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은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대)과 조선·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양(漢陽)이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유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 박물관(916개소) 중 14.7%인 135개소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sup>19)</sup> 역사교육 진흥에 있어 상당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 422개교 중 21%인 89개교가 위치하여<sup>20)</sup> 대학 등과 연계한 역사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서도 이미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할 때 동 조문은 정부,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서울의 풍부한 역사교육 관련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사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수행하고 여러 분야와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sup>21)</sup>

19) 문화체육관광부(2024.12.),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조(2024.1.1. 기준)

20) 한국교육개발원, 「2024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참조(2024.4.1. 기준)

21)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수정 제출(1건)(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128, 2025.2.19.)

-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는 역사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이 역사교육 활성화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의 자문과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구성·운영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의견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역사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sup>22)</sup> 위원회를 바탕으로 역사자료센터 설립과 선도학교 지정·운영, 체험·실천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림-1]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감 공약 백서 내용<sup>23)</sup>**

2-2-1.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추진

세부사업 1. 역사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정책연구 실시
  - 역사교육위원회, 역사자료센터 건립 관련 법적 검토 및 운영 연구
  - 각계 의견 수렴, 연구 자료 수합, 숙의·토론 진행을 통한 과제 추진
- 역사교육자문단 구성·운영
  - 역사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및 정책연구 실시
  - 역사교사, 대학 교수, 전문 연구자, 유관 기관·단체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역사교육 및 역사 전문가로 구성
  - 숙의를 통한 정확한 교육 자료 선정 및 제공, 의견 수렴, 자문 등
  - 역사자료센터 건립을 위한 분과추진단 구성: 역사자료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 교육청이 제안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와<sup>24)</sup> 유사

22) 서울시교육청(2024),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 제23대 정근식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 122쪽.

23) 위의 책 참조.

24)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서울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는 위원회이며, 각종 위원회는 개별 법령 및 자체 계획 등에 의해 설치되어 심의나

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치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동시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반복되는 역사교육의 이념 논쟁에<sup>26)</sup> 비추어 보았을 때 숙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자료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재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역사교육 관련 시책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하나인 중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연구”에 “공유·활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5조제3호).
-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신설).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자문 등을 위해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25)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은 2024.10.1.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함(자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2024년 10월 기준-폐지된 위원회 포함))

26)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한 사항이다. 역사교과서는 편향성이 논란이 되며, 정치적 격변기마다 검정과 국정으로 교과서 검정 방식이 바뀌어 왔다. 또한, 역사교과서는 검정 여부와 함께 북한에 관한 서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특정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에 있어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자료 : 한국일보(2024.8.31.), 친일? 친북? 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역사교과서 논란, 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3015360001201> (검색일 2025.2.22.))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55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에 기반을 두고 개발·연구된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유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공유·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또한,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역사교육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하나인 중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연구”에 “공유·활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5조제3호).
-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신설).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개발·연구”를 “개발·연구와 공유·활용”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신 설>

제7조 ~ 제9조 (생 략)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 제15조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판적·실천적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역사교육은 대내외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건전한 역사관 형성 및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역사 왜곡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해외 독립운동사, 강제동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자유 민주주의 수호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역사적 배경, 사건, 인물 등을 학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체험형 역사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역사교육 활성화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3.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연구와 공유·활용
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역사교육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운영
2. 역사적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자료 개발·보급
3. 지역 연계 역사교육을 위한 자원발굴 및 활용
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
5. 역사교육 연계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6. 역사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연수의 실시)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체험형 역사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